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1939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20588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19392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8. 8. 22.

판결 선고2018. 9.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133,830원 및 그중 292,312,763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4.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7. 6. 2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접수 제28116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1	2012. 6. 5.	170,000,000 (136,000,000으로 변경)	2013. 6. 4. (2018. 6. 1.까지로 연장)	D기업 운전자금대출	2012. 6. 5.	200,000,000
2	2017. 3. 10.	153,000,000	2018. 3. 9.	일반자금대출	2017. 3. 14.	170,000,000

○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피고 A은 2017. 12. 1.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18. 1. 18.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합계 292,312,763원(1차 보증 원금 136,000,000원 + 1차 보증 이자 1,818,897원 + 2차 보증 원금 153,000,000원 + 2차 보증 이자 1,493,8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위약금은 85,510원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1,053,007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317,450원을 회수하여 735,557원(= 1,053,007원 - 317,450원)의 채권보전비용이 남아 있다.

○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 피고 A은 2017. 6. 23.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접수 제28116호로 2017. 6. 21.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는 52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320,400,000원 및 133,2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원고에게 293,133,830원(= 이 사건 보증 대위변제금 292,312,763원 + 위약금 85,510원 + 채권보전비용 잔액 735,557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92,312,7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위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F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결과, 분당구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인 2017. 6.

21.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피고 A과 C 사이에 각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7. 12. 1.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7. 6. 21.에 체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2017. 6. 21. 기준으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5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금 채무 370,000,000원(= 200,000,000원 + 170,000,000원), 2016. 1. 20. E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금 채무 259,606,000원 합계 629,606,000원(= 370,000,000원 + 259,606,000원) 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 A은 위 2017. 6. 21.로부터 4개월 18일이 경과한 2017. 11. 8.부터 이 사건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에도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5개월 10일 뒤인 2017. 12. 1. 피고 A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당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그 뒤 2018. 3. 22. C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사후구상금 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520,000,000원, 소극재산은 629,606,000원 이상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6. 2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처분하였으며, 그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 A으로서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피고 B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피고 A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피고 A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3)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B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 B는 2016. 12. 10.경부터 피고 A와 거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들 사이의 거래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피고 A의 거래 관계의 주된 내용은, H의 원료 구입 및 완제품의 판매를 피고 A이 대행하고 원료 구입 대금은 H이 피고 A에게 구입 전에 지급하며, 완제품 판매 대금은 피고 A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유지된다면 피고 A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도의 규모로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금전 채권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는 위와 같은 거래 관계에서 피고 A에 대한 금전 채권이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는 않았다.

4)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상윤

판사권경원

판사신동일

별지